

2025. 7. 1. 시행

함께 나누고 함께 누려요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2025. 7. 1. 시행



CONTENTS

I 개선 내용 03

II 건설일용근로자 업무처리 기준 06

1. 건설 일용근로자 정의 07
2. 사업장 적용 07
3. 자격취득 및 상실시기 11
4. 유의사항 22
5. 기준소득월액 결정 23
6. 보험료 납부 및 확인 24

III 일반일용근로자 업무처리 기준 26

- 서식 30

I 개선 내용

II 건설일용근로자 업무처리 기준

III 일반일용근로자 업무처리 기준



I 개선 내용



1. 개선내용

가 일용근로자 업무처리 기준 공통 개선

- 일용근로자(건설 및 일반 일용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적용에 있어 근로시작일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2개월에 걸쳐 8일 이상 판단하는 것을 매월 말일 기준 월 8일 이상(월 소득 220만 원 이상) 근로를 판단하도록 개선

- (현행) 7.10. 근로 시작 시 7.10. ~ 8.9.까지 1개월 판단
- (개선) 7.10 근로 시작 시 7.31. 기준으로 1개월 판단

나 건설일용근로자 업무처리 기준 개선

- 건설 일용근로자가 건설 현장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건설 사업장 기준 합산 월 8일 이상(월 소득 220만 원 이상) 근로하였으면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하도록 개선
- (적용일) 2025.7.1. 이후 근로일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

2. 업무처리 기준 개선

가 일용근로자 업무처리 기준 공통 개선(건설 및 일반 일용)

◆ 1개월 판단 기준 개선

- (1개월 판단 기준 명확화) 근로시작일이 속한 월은 해당월 말일까지, 근로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는 초일부터 말일까지 8일(또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월 220만 원 판단

<사례> 7.10.~7.31. 7일 근로, 8.1.~8.9. 3일

현행

- 근로시작일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8일 이상 근로 판단



☞ 취득일 : 7.10. 상실일 : 10.1.

개선

- 근로시작일이 속한 월은 해당월 말일까지, 다음 달은 초일부터 말일까지 8일 이상(월 소득 220만 원) 근로 판단



☞ 취득일 : 7.10. 상실일 : 10.1.

나 건설일용근로자 업무처리 기준

◆개선 내용

- (현행) 건설현장별 8일 미만 시 가입 비대상 → (개선) 건설사업장 기준 합산 월 8일(합산 220만 원) 이상 시 사업장 가입 대상
 - (적용원칙) ①건설현장별 적용을 우선 판단하고, ②현장별 8일 미만으로 제외되는 대상자에 대해 건설사업장 기준 합산 1개월간 8일(합산 소득 220만 원) 이상 근로 시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 (적용순서) ①건설현장별 가입대상(월 8일 이상 등) 확인 → ②현장별 월 8일 미만이나 건설사업장 기준 합산 월 8일(합산 220만 원) 이상 근로 여부 확인

II 건설 일용근로자 업무처리기준



II 건설 일용근로자 업무처리기준



1. 건설 일용근로자 정의

- 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사업장에 사용되고 **직접노무비 대상**에 해당하는 일용근로자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업장
- (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의 사업장
-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사업장
-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사업장
- (5)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의 사업장
-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의 사업장

직접노무비 대상

- ▶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
- ▶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를 말하는 것으로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현장인 명부를 통하여 확인

간접노무비 대상

- ▶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 2-1
- ▶ 현장소장(공사현장대리인), 현장사무원 (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 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 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

2.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적용 기준

가 건설 현장별 적용(건설현장별 8일 이상 근로시 현장으로 우선 적용)

- 1) 본사 및 상용근로자와 구분하여, **건설 현장의 건설일용직만을 대상으로 사업장 분리 적용**
 - 분리 적용 사업장으로 등록 시 **가입자가 없어도 사업장으로 적용**하고 공사계약 기간 동안 사업장 유지
 - 원수급인, 하수급인 사업장별 **건설 현장 단위로 사업장 분리 적용**

- 사용자와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본사 사업장의 사업장가입자로 취득 가능**
 - 이 경우, 직접노무비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사의 상용근로자나 일반 일용근로자**로서 가입 여부 판단

2) 건설공사(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적용

- 단, **최초 공사(계약) 기간은 1개월 미만**이나, 기간 연장 및 갱신계약 등으로 **실제 공사 기간이 1개월 이상** 되는 건설 현장 포함

3) 건설공사의 사회보험료 사후정산 여부와는 관계없이 적용

-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도***는 건설 현장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 방안의 일종일 뿐이므로 **사업장의 사후정산제도 해당 여부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적용** 여부와는 무관함

* 건설 현장의 4대 보험료 중 **연금·건강·장기 요양** 납부영수증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기성금 지급 시 해당 납부보험료를 수령**하고, 공사 완료 시 지급금액과 당초(도급금액) 산출 명세서상 금액을 비교하여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제도

4) 사업장 신고방법 및 절차

- **(원칙)** EDI로 신고
 - **(예외*)** 서면, 우편, 팩스,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로 신고
- * EDI 시스템 이용 불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사업장 적용(등록) 신고**
 - **(필수 구비서류)**
 - ①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 ② 보험료 일괄경정고지·전자고지 신청서(서식 1)
 - ③ **원도급 또는 하도급 공사계약서***
 - * 공사계약서는 **사업장 성립일자, 공사기간** 등 확인용으로 반드시 제출
 - **(신고 구분 코드) “4:당연적용-건설”**로 등록

사업장 적용(등록) 유의사항

- 신고구분코드 “4.당연적용-건설”을 선택한 경우 **건설 사업기간, 최초 발주형태, 해당 연월일자**를 빠짐없이 등록
- 사업장 등록방법
 - (1) 사업장명칭 : **회사명칭+현장**[예: (주) 00건설 00동00공사현장]
 - (2) 사업장주소 : 공사현장 주소로 하되, 본점 주소지로 송달지 신청 가능
 - (3)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본점사업장의 사업자(법인)등록번호로 등록**
 - (4) 사용자 : **본점사업장의 사용자**로 등록
 - * 가입대상구분 “07-분리적용사업장 사용자”로 등록
 - (5) 본점 사업장 내역 입력 : 본점 사업장이 가입되지 않은 경우 본점 사업장을 등록 후 건설현장 사업장을 분리등록

● 사업장 내용변경(정정)

-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사업장 등록 등에 변경(정정) 사항이 있는 경우 신고
 - ※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변경된 공사계약서」 첨부(방문, 우편, FAX 가능)하고, 계약서가 없을 경우, 공문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입증자료를 사업장으로부터 징구

● 사업장 탈퇴

- **(탈퇴일)** 공사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
 - ※ 다만, 공사기간 종료 후에도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최종 근로한 날의 다음날로 탈퇴
- **(탈퇴 사유코드)** “09-사업종료”로 등록
 - 분리적용 해지절차 없이 탈퇴 처리

나 건설 사업장 적용

1) (가입대상) 건설현장별 8일(또는 월 220만 원)미만으로 건설현장별 적용 제외되나 사업장 기준 합산 1개월간 8일(또는 합산소득 220만 원)이상 근로시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

- **(적용원칙)** ① **건설현장별 적용**을 우선 판단하고, ② **현장별 8일 미만**으로 제외되는 대상자에 대해 **건설사업장 기준 합산 1개월간 8일(합산 소득 220만 원) 이상 근로 시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 **(적용순서)** ①건설현장별 가입대상(월 8일 이상 등) 확인 → ②현장별 월 8일 미만이나 **건설사업장 기준 합산 월 8일(합산 220만 원) 이상 근로 여부 확인**

2) 건설사업장 적용시 건설일용직만을 대상으로 사업장 분리적용

- (기존) 공사 현장별 → **(변경) 공사 현장별, '건설일용관리'*추가(1개만 관리)**
* (사업장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장 규모 판단을 고려하여 **건설사업장 합산 시 적용되는 대상자만 분리 적용**

3) 사업장 적용(등록) 신고

- **(필수 구비서류)**
 - ①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 ② 보험료 일괄경정고지·전자고지 신청서<서식 1>
- **(신고 구분 코드) “4:당연적용-건설”로 등록**

분리적용 사업장 신고 유의사항

※ “000회사명 건설일용관리” 분리 적용 신고서 접수 시 등록여부 확인 후 처리

- ① (분리적용 사업장 명칭) 회사명칭 + 건설일용관리[예 : (주)00건설 건설일용관리]
- ② (건설사업기간) 성립 신고일('25.7.1. 이후) ~ 9999.12.31.
- ③ (사업장주소) 본사 주소
- ④ (사업자(법인)등록번호) 본사 사업장의 사업자(법인)등록번호로 등록
- ⑤ (사용자) 본사사업장의 사용자로 등록
가입대상구분 “07-분리적용사업장 사용자” 등록

3. 자격취득 및 상실시기

구분	1 건설 현장 기준 적용	2 건설 사업장 기준 적용
취득일	① 근로시작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8일(또는 소득 220만 원) 이상 근로하고 다음 달 초일부터 말일까지 8일 이상 근로 : 근로시작일	① 사업장 기준 근로시작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합산 8일(또는 합산 소득 220만 원) 이상 근로하고 다음 달 초일부터 말일까지 합산 8일 이상 근로 : 근로시작일
	② 근로시작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8일(또는 소득 220만 원) 미만 근로하였으나, 근로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말일까지 8일(또는 소득 220만 원) 이상 근로 : 근로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	② 사업장 기준 근로시작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합산 8일(또는 합산 소득 220만 원) 미만 근로하였으나, 근로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말일까지 합산 8일(또는 합산 소득 220만 원) 이상 근로 : 근로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
	③ 근로시작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8일 미만 근로하였으나 그 기간의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이고 다음 달 초일부터 말일까지 소득이 220만 원 이상 : 근로시작일	③ 사업장 기준 근로시작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합산 8일 미만 근로하였으나 그 기간의 합산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이고 다음 달 초일부터 말일까지 합산 소득이 220만 원 이상 : 근로시작일
상실일	① 최종근로일이 속한 달에 8일(또는 소득 220만 원) 이상 근로 : 최종근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	① 사업장 기준 최종근로일이 속한 달에 합산 8일(또는 합산 소득이 220만 원) 이상 근로 : 최종근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
	② 최종근로일이 속한 달에 초일부터 말일까지 8일(또는 소득 220만 원) 미만 근로 : 최종근로일이 속한 달의 초일 또는 최종근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 * 사용자와 근로자가 희망 시 가능, 희망 여부 판단은 신고서 제출로 확인	② 사업장 기준 최종근로일이 속한 달에 초일부터 말일까지 사업장 기준 합산 8일(또는 합산 소득 220만 원) 미만 근로 : 최종근로일이 속한 달의 초일 또는 최종근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 * 사용자와 근로자가 희망 시 가능, 희망 여부 판단은 신고서 제출로 확인

건설일용 근로자 가입요건 판단 흐름도



가 자격 취득일 예시

사례 ① 건설 현장 기준 적용

- ▶ 근로시작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8일(또는 소득 220만 원) 이상 근로하고 다음 달 초일부터 말일까지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취득일 : 7.17. 상실일 : 10.1.

취득일 : 근로시작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8일 이상 근로하고 다음 달 초일부터 말일까지 8일 이상 근로하여 근로시작일을 자격취득일로 적용

상실일 : 근로시작일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판단하므로 최종근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로 상실

사례 ① 건설 사업장 기준 적용

- ▶ 사업장 기준 근로시작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합산 8일(또는 합산 소득 220만 원) 이상 근로하고 다음 달 초일부터 말일까지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구 분	7월		8월		9월	
	근로기간	일수	근로기간	일수	근로기간	일수
계		8		8		8
A현장	7.17. ~ 7.20.	4	8.21. ~ 8.24.	4	9.5. ~ 9.15.	4
B현장	7.21. ~ 7.24.	4	8.25. ~ 8.28.	4	9.20. ~ 9.29.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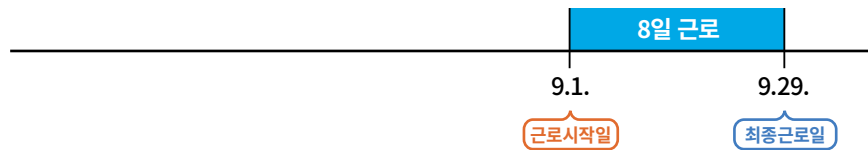
취득일 : 7.17. 상실일 : 10.1.

취득일 : 사업장 기준 근로시작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합산 8일 이상 근로하고 다음 달 초일부터 말일까지 합산 8일이상 근로하여 근로시작일을 자격취득일로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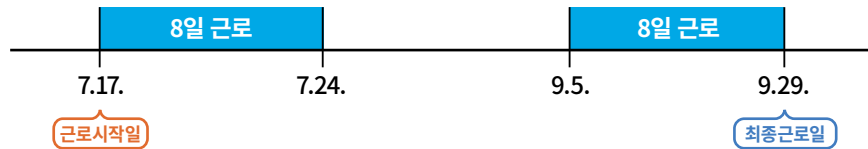
상실일 : 근로시작일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판단하므로 최종근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로 상실

사례 ①-2 건설 현장 기준 적용

▶ 근로시작일이 초일이나 1개월 미만 근로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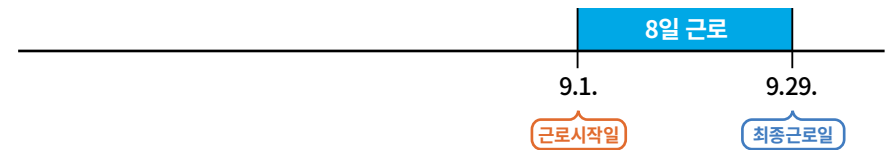
▶ 연속근로도 없고 근로시작일도 초일이 아닌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가입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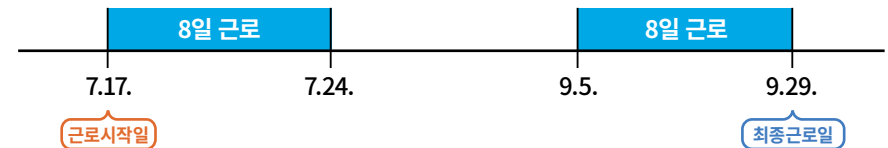
사례 ①-2 건설 사업장 기준 적용

▶ 사업장 기준 근로시작일이 초일이나 1개월 미만 근로한 경우



구 분	9월	
	근로기간	일수
계		8
A현장	9.1. ~ 9.15.	4
B현장	9.20. ~ 9.29.	4

▶ 사업장 기준 연속 연속근로도 없고 근로시작일도 초일이 아닌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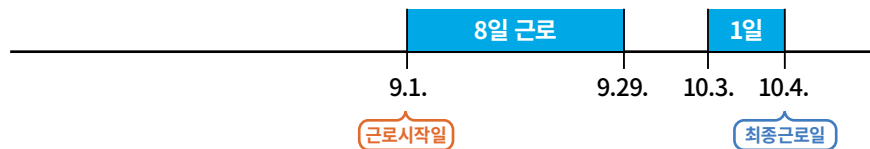


구 분	7월		구 분	9월	
	근로기간	일수		근로기간	일수
계		8			8
A현장	7.17. ~ 7.20.	4		9.5. ~ 9.15.	4
B현장	7.21. ~ 7.24.	4		9.20. ~ 9.29.	4

1개월 미만으로 가입 제외

사례 ①-3 건설 현장 기준 적용

- ▶ 근로시작일이 초일이고, 최종근로일이 속한 달에 초일부터 말일까지 8일(또는 소득 220만 원) 미만 근로



취득일 : 9.1. 상실일 : 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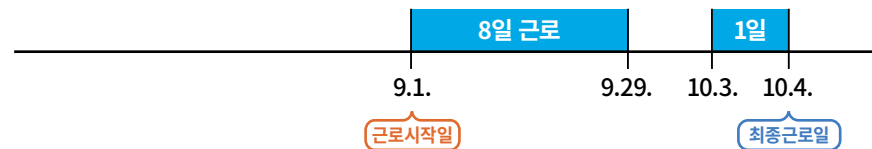
취득일 : 초일에 근로를 시작하여 해당월 말일까지 8일 근로하였고, 근로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에 연속하여 근로하여 9.1. 자격취득

상실일 : 근로시작일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판단하므로 최종근로일이 속한 달에 8일 미만 근로하여 최종근로일이 속한 달의 초일인 10.1 상실*

* 사용자와 근로자가 희망하면 최종근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로 상실할 수 있으며, 희망 여부 판단은 신고서 제출로 확인

사례 ①-3 건설 사업장 기준 적용

- ▶ 사업장 기준 근로시작일이 초일이고, 최종근로일이 속한 달에 초일부터 말일까지 합산 8일(또는 합산 소득 220만 원) 미만 근로



구 분	9월		10월	
	근로기간	일수	근로기간	일수
계		8		
A현장	9.1. ~ 9.15.	4	10.3. ~ 10.4.	1
B현장	9.20. ~ 9.29.	4		

취득일 : 9.1. 상실일 : 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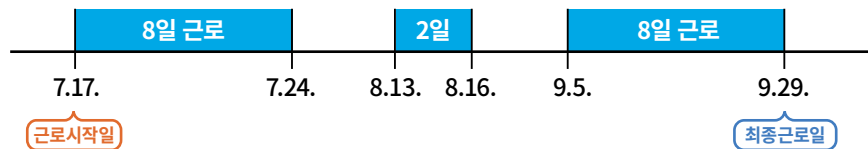
취득일 : 초일에 근로를 시작하여 해당월 말일까지 합산 8일 근로하였고, 근로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에 연속하여 근로하여 9.1. 자격취득

상실일 : 근로시작일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판단하므로 최종근로일이 속한 달에 합산 8일(또는 합산 소득 220만 원) 미만 근로하여 최종근로일이 속한 달의 초일인 10.1 상실*

* 사용자와 근로자가 희망하면 최종근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로 상실할 수 있으며, 희망 여부 판단은 신고서 제출로 확인

사례 ①-4 건설 현장 기준 적용

- ▶ 근로시작일 이후 연속하여 근로하였고 초일부터 말일까지 8일 이상 근로



☞ **취득일 : 9.1. 상실일 : 10.1.**

취득일 : 근로시작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시작일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말일까지 근로를 확인하여 8일(월 소득 220만 원) 이상 근로를 판단

- 따라서, 근로 월이 이어져 있는 경우 초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 단위로 판단하여 가입 대상 여부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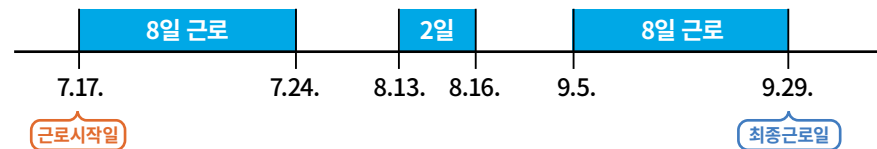
- 7월 말 기준 8일 이상 근로하여 7.17. 취득이나 근로시작일의 다음 달 초일부터 말일까지(8월) 8일 미만 근로하였으므로 7월 가입 제외

상실일 : 8월은 8일 미만 근로하였으므로 가입 대상 월에서 제외하고 9월은 8일 이상 근로하여 9.1. 취득, 10.1. 상실

*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희망하면 7.17 취득, 10.1. 상실 가능

사례 ①-4 건설 사업장 기준 적용

- ▶ 사업장 기준 근로시작일 이후 연속하여 근로하였고 초일부터 말일까지 8일 이상 근로



구 분	7월		8월		9월	
	근로기간	일수	근로기간	일수	근로기간	일수
계		8		2		8
A현장	7.17. ~ 7.20.	4	8.13. ~ 8.16.	2	9.5. ~ 9.15.	4
B현장	7.21. ~ 7.24.	4			9.20. ~ 9.29.	4

☞ **취득일 : 9.1. 상실일 : 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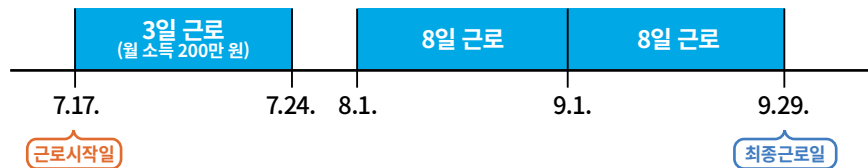
취득일 : 근로시작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시작일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말일까지 근로를 확인하여 합산 8일(월 소득 220만 원) 이상 근로를 판단

상실일 : 8월은 합산 8일 미만 근로하였고 9월은 합산 8일 이상 근로하여 9.1. 취득, 10.1. 상실

*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희망하면 7.17 취득, 10.1. 상실 가능

사례 ② 건설 현장 기준 적용

- ▶ 근로시작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8일(또는 소득 220만 원) 미만 근로하였으나, 근로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말일까지 8일(또는 소득 220만 원) 이상 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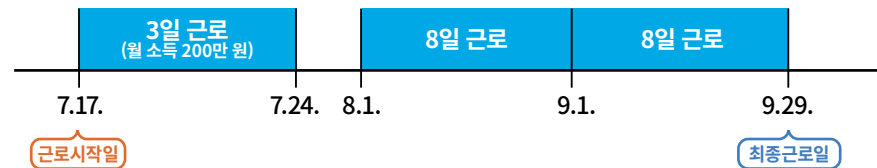
☞ **취득일 : 8.1. 상실일 : 10.1.**

취득일 : 근로시작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8일 미만(또는 소득 220만 원 미만) 이나 근로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말일까지 8일 이상 근로

상실일 : 근로시작일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최종 근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로 상실

사례 ② 건설 사업장 기준 적용

- ▶ 사업장 기준 근로시작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합산 8일(또는 합산 소득 220만 원) 미만 근로하였으나 근로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말일까지 합산 8일(또는 합산 소득 220만 원) 이상 근로한 경우



구 분	7월		8월		9월	
	근로기간	일수	근로기간	일수	근로기간	일수
계		3		8		8
A현장	7.17. ~ 7.24.	3	8.21. ~ 8.24.	4	9.5. ~ 9.15.	4
B현장			8.25. ~ 8.28.	4	9.20. ~ 9.29.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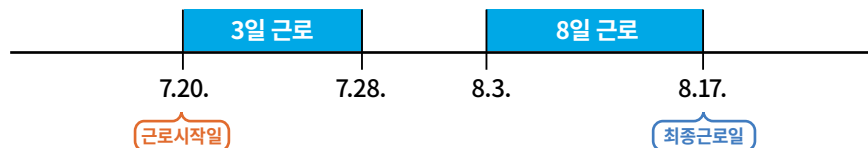
☞ **취득일 : 8.1. 상실일 : 10.1.**

취득일 : 사업장 기준 근로시작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합산 8일 미만(또는 합산 소득 220만 원 미만) 이나 근로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말일까지 합산 8일 이상 근로하여 근로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로 자격취득일 적용

상실일 : 근로시작일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최종 근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로 상실

사례 ②-2 건설 현장 기준 적용

- ▶ 근로시작일부터 근로하여 해당월 말일까지 8일 미만 근로하고, 근로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말일까지 8일(또는 소득 220만 원) 이상 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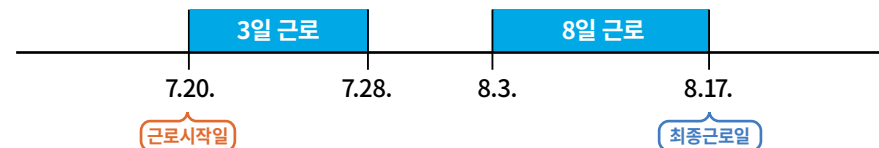
취득일 : 8.1. 상실일 : 9.1.

취득일 : 근로시작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8일 미만(또는 소득 220만 원 미만) 이나 근로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말일까지 8일 이상 근로

상실일 : 최종근로일이 속한 달에 8일(또는 소득 220만 원) 이상 근로하였으므로 최종근로일이 속한 달의 다음 초일로 상실

사례 ②-2 건설 사업장 기준 적용

- ▶ 사업장 기준 근로시작일부터 근로하여 해당월 말일까지 합산 8일 미만 근로하고, 근로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말일까지 합산 8일(또는 소득 220만 원) 이상 근로



구 분	7월		8월	
	근로기간	일수	근로기간	일수
계		3		8
A현장	7.20. ~ 7.28.	3	8.3. ~ 8.10.	4
B현장			8.12. ~ 8.17.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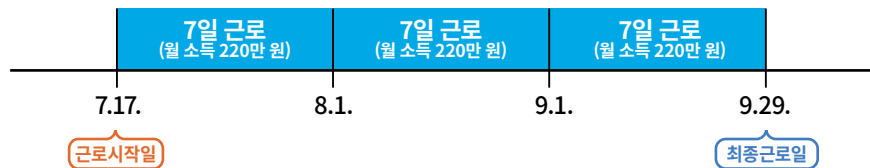
취득일 : 8.1. 상실일 : 9.1.

취득일 : 근로시작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합산 8일(또는 합산 소득 220만 원) 미만이나 근로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말일까지 합산 8일 이상 근로

상실일 : 최종근로일이 속한 달에 합산 8일(또는 합산 소득 220만 원) 이상 근로하였으므로 최종근로일이 속한 달의 다음 초일로 상실

사례 ③ 건설 현장 기준 적용

- ▶ 근로시작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8일 미만 근로하였으나 그 기간의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이고 다음 달 초일부터 말일까지 소득이 220만 원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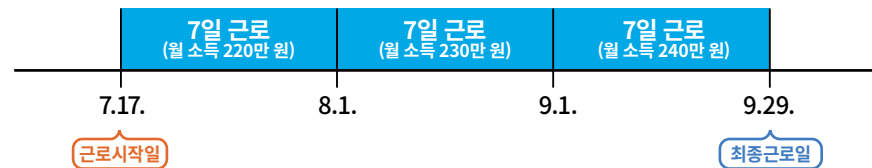
☞ **취득일 : 7.17. 상실일 : 10.1.**

취득일 : 근로시작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8일 미만이나 그 기간의 소득이 220만 원 이상으로 근로시작일을 자격취득일 적용

상실일 : 근로시작일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최종 근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로 상실

사례 ③ 건설 사업장 기준 적용

- ▶ 사업장 기준 근로시작일로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합산 8일 미만 근로하였으나 그 기간의 합산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이고 다음 달 초일부터 말일까지 합산 소득이 220만 원 이상



구 분	7월			8월			9월		
	근로기간	일수	금액	근로기간	일수	금액	근로기간	일수	금액
계		7	220		7	230		8	240
A현장	7.17. ~ 7.20.	3	100	8.21. ~ 8.24.	4	130	9.5. ~ 9.15.	4	120
B현장	7.21. ~ 7.24.	4	120	8.25. ~ 8.28.	3	100	9.20. ~ 9.29.	4	120

☞ **취득일 : 7.17. 상실일 : 10.1.**

취득일 : 사업장 기준 근로시작일로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8일 미만이나 그 기간의 합산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이므로 근로시작일을 자격취득일로 적용

상실일 : 근로시작일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최종 근로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초일로 상실

나 자격 상실일 예시

사례 ① 건설 현장 기준 적용

▶ 최종근로일이 속한 달에 8일(소득 220만 원) 이상 근로



☞ **취득일 : 7.17. 상실일 : 10.1.**

취득일 : 근로시작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8일 이상 근로하고 다음 달 초일부터 말일까지 8일 이상 근로하여 근로시작일을 자격취득일로 적용

상실일 : 1개월의 판단을 근로시작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시작일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최종근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로 상실

사례 ① 건설 사업장 기준 적용

▶ 사업장 기준 최종근로일이 속한 달에 합산 8일(합산 소득 220만 원) 이상 근로



구 분	7월		8월		9월	
	근로기간	일수	근로기간	일수	근로기간	일수
계		8		8		8
A현장	7.17. ~ 7.20.	4	8.21. ~ 8.24.	4	9.5. ~ 9.15.	4
B현장	7.21. ~ 7.24.	4	8.25. ~ 8.28.	4	9.20. ~ 9.29.	4

☞ **취득일 : 7.17. 상실일 : 10.1.**

취득일 : 사업장 기준 근로시작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합산 8일 이상 근로하고 다음달 초일부터 말일까지 8일 이상 근로하여 근로시작일을 자격취득일로 적용

상실일 : 1개월의 판단을 근로시작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시작일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최종근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로 상실

사례 ② 건설 현장 기준 적용

- ▶ 최종근로일이 속한 달에 초일부터 말일까지 8일(소득 220만 원) 미만 근로



☞ **취득일 : 8.1. 상실일 : 9.1. 또는 10.1**

취득일 : 근로시작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8일 이상 근로하고 다음 달 초일부터 말일까지 8일 이상 근로하여 근로시작일을 자격취득일로 적용

상실일 : 최종근로일이 속한 달에 8일 미만 또는 월 소득 220만 원 미만으로 최종근로일이 속한 달의 초일인 9.1. 또는 최종근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인 10.1.을 상실일로 적용

* 사용자와 근로자가 희망하면 최종근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로 상실할 수 있으며, 희망 여부 판단은 신고서 제출로 확인

사례 ② 건설 사업장 기준 적용

- ▶ 사업장 기준 최종근로일이 속한 달에 초일부터 말일까지 사업장 기준 합산 8일(합산 소득 220만 원) 미만 근로



구 분	7월		8월		9월	
	근로기간	일수	근로기간	일수	근로기간	일수
계		8		8		7
A현장	7.17. ~ 7.21.	4	8.21. ~ 8.24.	4	9.5. ~ 9.15.	3
B현장	7.22. ~ 7.25.	4	8.25. ~ 8.28.	4	9.20. ~ 9.29.	4

☞ **취득일 : 8.1. 상실일 : 9.1. 또는 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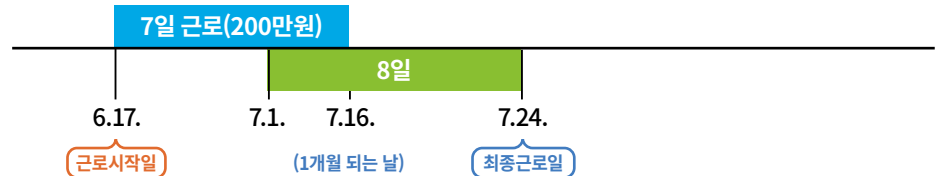
취득일 : 사업장 기준 근로시작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합산 8일 이상 근로하고 다음 달 초일부터 말일까지 합산 8일 이상 근로하여 근로시작일을 자격취득일로 적용

상실일 : 최종근로일이 속한 달에 합산 8일 미만 또는 합산 소득 220만 원 미만으로 최종근로일이 속한 달의 초일인 9.1. 또는 최종근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인 10.1.을 상실일로 적용

* 사용자와 근로자가 희망하면 최종근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로 상실할 수 있으며, 희망 여부 판단은 신고서 제출로 확인

4.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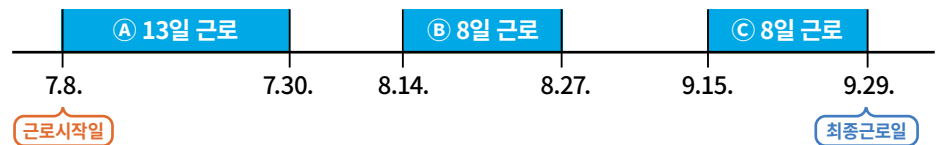
- 가 (사업장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장 규모 판단 시 현행과 같이 본점 규모 판단 후 '건설일용관리' 분리적용 사업장 규모 판단
- 나 7월 이전 근로시작일이 있는 경우(건설현장 및 건설사업장 동일 판단)



취득일 : 7.1. 상실일 : 8.1.

※ 개선 지침 적용일 이전부터 근로하였으나 8일 미만으로 가입 제외된 자가 지침 적용일('25.7.1.) 이후에는 초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을 판단함으로 7월은 가입 대상

- 다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월 단위로 근로일수를 판단하여 적용여부 확인하며 취득·상실을 반복하지 않도록 유의



▶ <착오 처리> ① 취득/상실(7.8./7.31.) ② 취득/상실(8.14./8.28.) ③ 취득/상실(9.15./9.30.)

▶ <적정 처리> 취득(7.8.) / 상실(10.1.)

- 라 건설현장 8일 이상 근로하였으나 건설사업장으로 가입하는 경우

<근로일이 없는 월이 있는 경우>



구 분	7월		8월		9월	
	근로기간	일수	근로기간	일수	근로기간	일수
계		8		8		8
A현장	7.17. ~ 7.29.	8			9.5. ~ 9.20.	8
B현장			8.5. ~ 8.25.	8		

취득일 : 7.17. 상실일: 10.1.

※ 건설현장별 우선 적용원칙에 따라 건설현장별 8일 이상 근로가 확인되나 근로가 연속되지 않아 건설현장별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건설사업장 기준 판단

- 건설 현장을 우선 판단 후 건설사업장 합산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8일 근로		8일 근로		8일 근로		
7.17.		8.1.		9.1.		
근로시작일				최종근로일		
구 분	7월		8월		9월	
	근로기간	일수	근로기간	일수	근로기간	일수
계		8		9		16
A현장	7.17. ~ 7.29.	8	8.2.	1	9.2. ~ 9.15.	8
B현장			8.15. ~ 8.25.	8	9.17. ~ 9.22.	4
C현장					9.25. ~ 9.29.	4

① 취득일: 7.17. 상실일: 9.1.〈건설사업장〉 ② 취득일: 9.1. 상실일: 10.1.〈A현장〉

※ **건설현장별 우선 적용 원칙**에 따라 A현장 기준 근로시작일인 7월 17일부터 9월 15일까지 근로일수를 판단할 때 7월은 8일, 8월은 1일, 9월은 8일 근로일수가 있어 9월은 A현장으로 가입

사업장 기준 7월에 A현장 8일근로, 8월은 B현장 8일 근로하여 사업장 기준으로 연속월에 근로 이력이 있어 7월과 8월은 사업장으로 가입

- A현장 기준 7월과 9월에 8일 이상 근로 확인. A현장 가입 대상 월은 9월임

- 9월은 A 현장 8일, 건설사업장 기준 합산 8일 이상이나 건설 현장 적용이 우선이므로 **현장으로만 적용**

5. 기준소득월액 결정

가 적용대상: 건설현장 및 건설사업장의 일용근로자

나 적용기준: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매월 지급받는 실제 소득 월액으로 결정

다 결정 방법

- 자격취득(또는 납부재개) 시

- 결정기준 : 취득(재개)월의 실제 소득월액

- 적용기간 : 취득(재개)월부터 다음 변경신청 월의 전월까지

- 가입기간 중

- 결정기준 : 소득월액 변경신청에 의한 매월 실제 소득월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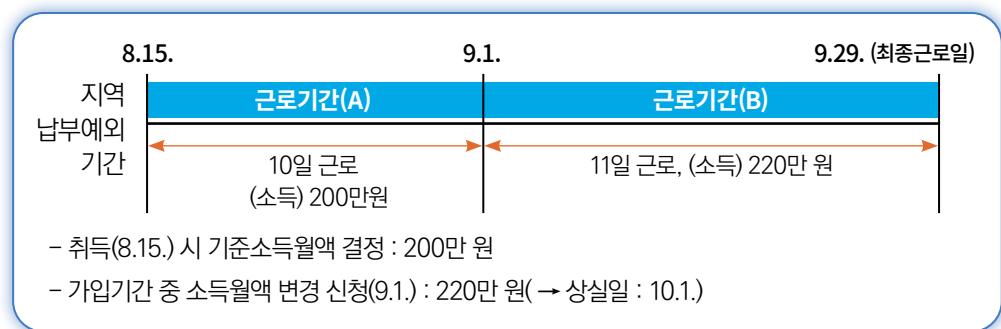
- 적용기간 : 소득월액 변경신청 월부터 다음 변경신청 월의 전월까지

※ 매년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대상에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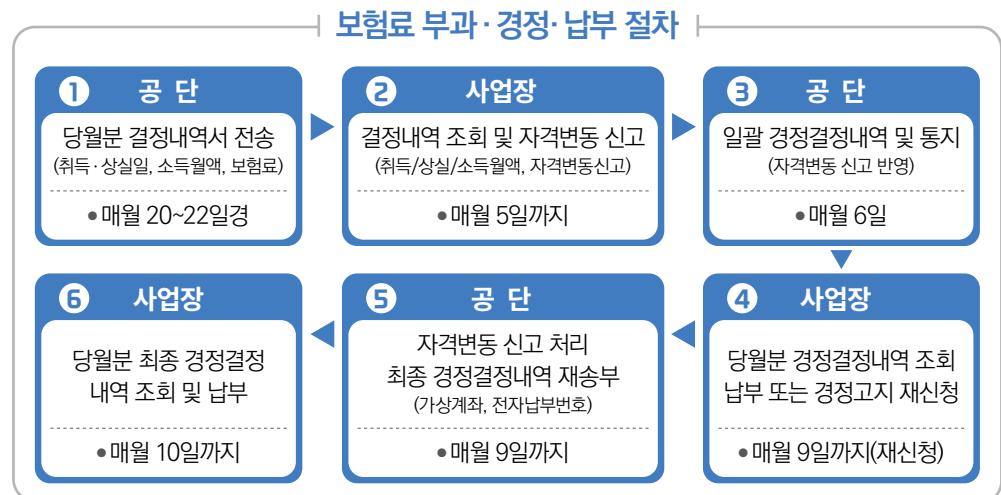
- 당월 초일 이후부터 말일까지 기준소득월액 결정 신청이 들어올 경우, 적용일은 당월의 초일을 변동일로 적용
 - 잦은 경정에 따른 변동일 및 처리일의 상이로 인한 업무처리 혼란방지

기준소득월액 결정 예시

[사례]



6. 보험료 납부 및 확인



가 보험료 경정

- 당월 보험료 부과
 - 자격변동 신고 마감일(매월 15일) 기준으로 보험료 결정 내역서 및 전자 고지서 송부

● 일괄경정

- 당월 결정 내역 확인 후 자격변동 신고 대상이 있는 경우 다음 달 5일(휴일인 경우 다음 날)까지 신고
- 변동사항을 반영한 일괄경정 결정 내역서를 사업장에 EDI로 통지(매월 6일)
- 건설 현장 사업장은 반드시 일괄경정에 의한 최종 결정 금액 기준으로 보험료 납부
 - * 일괄경정 고지 후 보험료는 전자 납부 번호(사회보험통합징수 포털, 인터넷 지로, 인터넷뱅킹, CD/ATM) 및 가상계좌번호로 납부

● 수시 경정

- 일괄경정 전·후에 보험료 납부 및 사후정산이 필요한 경우 **수시 경정 고지 신청***
 - * 납부 마감일 1일 전(토·일·공휴일인 경우 전날)까지 EDI로 경정고지 신청
 - ※ 납부마감일에는 EDI 신청 불가(부득이한 경우 관할지사에 신청)
- 수시 경정 고지 신청 즉시 최종 납부할 금액 확정 후 경정 결정내역서를 EDI로 재송부

나 보험료 납부확인

- 사업장은 「사업장 국민 연금보험료(월별) 납부확인서」, 가입자는 「연금산정용 가입내용확인서(사업장가입자)」 발급 (EDI 시스템, 방문, 팩스, 인터넷 발급 가능)

III 일반 일용근로자 업무처리기준



III 일반 일용근로자 업무처리기준



1. 일반 일용근로자의 정의

- 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에 따라 **건설 현장 외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2. 사업장 적용

- 법 제3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사업장 단위 적용

3. 사업장가입자 적용

가 가입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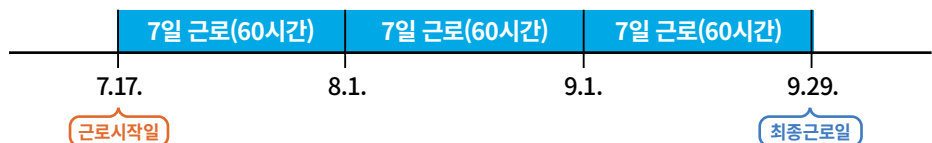
-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22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가입 대상임

*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금액으로 매년 변동될 수 있음

나 1개월 판단

- 근로시작일 속한 월은 근로시작일부터 **해당월의 말일까지**, 근로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는 **초일부터 말일까지 8일(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월 소득 220만 원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취득일 · 상실일 적용 사례〉



☞ **취득일 : 7.17. 상실일 : 10.1.**

취득일 : 근로시작일로부터 해당월 말일인 7.31.까지 총 60시간 이상 근로하고 다음 달 초일부터 말일까지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여 근로시작일을 자격취득일로 적용

상실일 : 최종근로일이 9.29.일이나 근로시작일의 다음 달부터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판단하므로 최종근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로 상실

다 자격 취득 및 상실 시기

• 자격취득일

- ① 근로시작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그 기간의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인 경우 : **근로시작일**
- ② 근로시작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8일 미만 및 60시간 미만 근무하였고 그 기간의 소득이 220만 원 미만이었지만, 근로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말일까지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월 소득 220만 원 이상인 경우 : **근로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1일)**
- ③ 근로시작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8일 미만 또는 60시간 미만 근로하였으나 그 기간의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인 경우 : **근로시작일**

• 자격상실일

- ① 최종근로일이 속한 달에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그 기간의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인 경우 : **최종근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
- ② 최종근로일이 속한 달에 8일 미만 또는 60시간 미만 근로하면서 그 기간의 소득이 220만 원 미만인 경우 : **최종근로일이 속한 달의 초일 또는 최종근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

* 사용자와 근로자가 희망하면 최종근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로 상실할 수 있으며, 희망 여부 판단은 신고서 제출로 확인

라 취득일 및 상실일 예시

- ▶ 일반 일용근로자의 취득 및 상실 예시는 건설 일용근로자의 취득일 및 상실일 사례와 동일하므로, 월 60시간 이상 근로에 대한 조건의 예시만 제시함

자격 취득 및 상실일 적용

[사례 1] 근로시작일로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8일 미만 근로하였고 소득이 220만 원 미만이지만 60시간 이상 근로하고, 다음 달 초일부터 말일까지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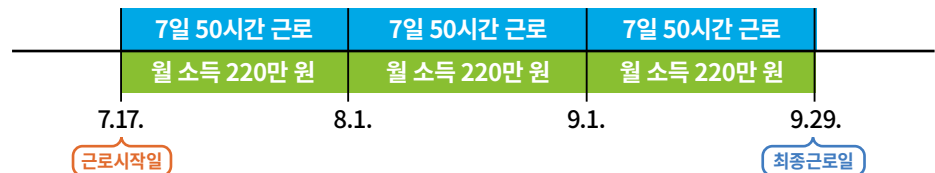


☞ **취득일 : 7.17. 상실일 : 10.1.**

취득일 : 근로시작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7일(월 210만 원) 근로하였으나 60시간 이상 근로하여 근로시작일을 자격취득일로 적용

상실일 : 1개월의 판단을 근로시작일(초일인 경우 초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시작일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최종근로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초일로 상실

[사례 2] 근로시작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8일 미만 및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나 그 기간의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인 경우



☞ **취득일 : 7.17. 상실일 : 10.1.**

취득일 : 근로시작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8일(월 60시간) 미만이나 그 기간의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이므로 근로시작일을 자격취득일로 적용

상실일 : 1개월의 판단을 근로시작일(초일인 경우 초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시작일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최종근로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초일로 상실

보험료 일괄경정고지 · 전자고지 신청서

사 업 장	명 칭					
	사업장 관리번호	건강보험				
		국민연금				
	주 소				전화번호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장과의 관계	
전자고지 신청내역	고지방법	정기고지서 EDI(전자문서교환시스템) 고지(매월 21~23일) ※ 정기고지서에 대한 별도의 우편고지서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해당기간	사업장 당연적용 해당 월 ~ 해지신청 월				
일괄 경정고지 신청내역	신청사유	건설현장 사업장(건설일용근로자 정산)				
	해당기간	사업장 당연적용 해당 월 ~ 탈퇴 월				
	경정고지내역	경정일자	매월 6일 * 6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일			
		발송방법	EDI(경정고지 내역서 및 전자납부번호 등)			

※ 사업장에서는 매월 6일 EDI시스템에서 일괄 경정고지 내역서 수신 후 경정고지금액으로 납부

위와 같이 보험료 일괄 경정고지·전자고지를 신청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청인(사용자) : (인)

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귀하

신청인(사용자) : (인)

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귀하

1.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보험료 등의 납입고지), 국민연금법 제88조의2(납입의 고지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납입고지서의 전자고지 등),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4조(전자문서 고지 등)에 전하는 소관업무 수행을 위하여 공단은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2. 공단이 수집·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제공됩니다.